

패스워드 간편결제 이용약관 신구조문 대비표

현행 약관	개선안	비고
<p>제11조(간편결제 해지 및 이용 제한)</p> <p>② “회사”는 “회원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“간편결제” 이용 계약을 <u>해지하거나 “간편결제”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</u></p> <p>1. “회원”이 <u>이 약관 또는 “카드” 관련 약관, “간편결제” 이용에 관련된 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</u></p> <p>2. 이용정지·해지 등 “회원”이 신용카드 등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(삭제)</p> <p>3. “회원”이 관계법령, 감독규정, 감독기관의 지침, “회사”의 약관, 지침 등을 위반한 경우(삭제)</p> <p>4. “간편결제”의 이용 목적에 불합리한 용도로 이용한 경우(삭제)</p> <p>5.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한 경우</p> <p>6. 해킹에 이용하거나 해킹을 한 경우</p> <p>③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“회원”은 이로 인하여 “회사”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.(삭제)</p> <p>④ 제②항의 조치에 대하여 “회원”은 “회사”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이 정당하다고 “회사”가 인정하는 경우에 “회사”는 즉시 “서비스”이용을 재개하여야 합니다.</p>	<p>제11조(“간편결제” 이용 정지 및 해지)</p> <p>② “회사”는 “회원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“간편결제”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.</p> <p>1. “회원”의 고의·중과실로 인해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법령 또는 이 약관을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</p> <p>2. 가입신청서에 필수기재사항 및 “간편결제” 이용자격 관련 정보 등 중요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</p> <p>3. 타인의 “카드번호 등”을 도용하는 등 비정상적인 “카드번호 등”을 등록하는 경우</p> <p>③ “회사”는 “회원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10영업일 전에 “간편결제” 이용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, 10영업일이 경과할 경우 “간편결제”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(단, 제5호, 제6호의 경우 즉시 해지)</p> <p>1. “회원”의 고의·중과실로 인해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법령 또는 이 약관을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달성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</p> <p>2. 가입신청서에 필수기재사항 및 “간편결제” 이용자격 관련 정보 등 중요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하여 “회원”의 신</p>	<p>공정위 지적사항 반영</p>

현행 약관	개선안	비고
	<p><u>용상태가 현저히 악화되었거나, 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</u></p> <p><u>3. 타인의 “카드번호 등”을 도용하는 등 비정상적인 “카드번호 등”을 등록하여 계약의 목적 달성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</u></p> <p><u>4. “모바일 기기”의 명이나 전화번호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“회원”이 이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</u></p> <p><u>5.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한 경우</u></p> <p><u>6. 해킹에 이용하거나 해킹을 한 경우</u></p> <p>④ 제②,③항의 조치에 대하여 “회원”은 “회사”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, 이의 신청이 정당하다고 “회사”가 인정하는 경우에 “회사”는 즉시 “간편결제” 이용을 재개하여야 합니다.</p>	